

# 선수위원회 운영규정

제 정 2016. 2. 25.  
전면개정 2016. 10. 14.  
개 정 2020. 11. 00.

제1조(설치근거 및 명칭) 대한장애인골볼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 **선수위원회는 대한장애인 체육회 선수위원회운영규정 제16조 및 협회 정관 제27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, 그 명칭은 대한장애인골볼협회 선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 <개정 '20. 11. 00.>**

제2조(목적) 위원회는 선수 및 지도자의 권익을 보호, 증진하여 건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고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을 통해 존경받는 체육인상을 확립함으로써 **패럴림픽** 정신의 보급·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**<개정 '20. 11. 00.>**

제3조(적용범위) **협회에** 등록된 선수에 적용한다. **<개정 '20. 11. 00.>**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.

1. **패럴림픽대회** 등 각종 국제대회 관련,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 및 **패럴림픽**정신의 보급·확산 **<개정 '20. 11. 00.>**
2. 국제장애인스포츠기구 선수위원회의 교류 및 협조에 관한 사항
3. 선수 및 지도자의 권익 보호, 증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
4. 선수등록에 따른 제도개선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
5. 선수활동에 관한 제반사항 및 조정에 관한 사항
6. 은퇴선수 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사항
7. 골볼협회 회장 선거인단 추천에 관한 사항
8. 기타 위원회 설립 목적과 관련된 사항
9. 위 각 호와 관련되는 부대사업

제5조(구성)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위원장 1인

2. 부위원장 1~3인
3. 위원 18인 이내(위원장 부위원장 포함) <개정 '20. 11. 00.>
- ② 위원은 정기등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 협회에 등록된 선수이어야 하며, 위원 선임 년도 기준 2년 연속 선수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한다. <개정 '20. 11. 00.>
-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회장이 협회 사무처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. <개정 '20. 11. 00.>

**제5조의 2(위원장의 선출)** ① 위원장은 직선제로 선출하며,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자 중 최다 득표자로 선출된 자를 회장이 위촉한다. <신설 '20. 11. 00.>

② 위원장 선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<신설 '20. 11. 00.>

**제6조(위원의 위촉)**

- 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된 자를 회장이 위촉하며, 부위원장이 2인일 경우에는 선임 순서를 위원회에서 정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 10. 7.>, <개정 '20. 11. 00.>
- ② 위원은 시·도지부에서 선출된 선수위원장을 회장이 위촉한다. <신설 2016. 10. 7.>, <개정 '20. 11. 00.>

**제7조(협회 회장 선거인 선출)** ① 위원회는 협회 회장선거를 위하여 위원 중에서 선거인 3인을 선출하고 위원장과 함께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으로 추천해야 한다. (신설:2016.10.7.), <개정 '20. 11. 00.>

1. <삭제 '20. 11. 00.>
2. <삭제 '20. 11. 00.>
- ② 제1항의 선거인은 협회 회장 임기 60일 전까지 선출하여야 하며, 새롭게 선출하지 않을 경우 회장 선거권을 제한한다. (신설:2016.10.7.), <개정 '20. 11. 00.>

**제8조(위원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
**제9조(임기)**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,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협회 정관 제15조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제6조에 의한 선거인은 임기 시작 전이라도 제7조 제2항에 의거 선출된 당선자가 된다. <개정 '20. 11. 00.>

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위원의 해촉)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.

1.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
2. 위원이 질병, 해외출장,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3.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4. 위원으로 선임된 기간 동안 선수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
5. 소속 시·도지부에서 직위를 잃었을 경우 (신설:2016.10.7), <개정 '20. 11. 00.>

제11조(회의소집) 위원장은 **협회의 요구 또는 필요에 따라** 위원회를 소집한다. <개정 '20. 11. 00.>

제12조(의결정족수)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
제13조(제척 및 회피) 위원은 본인,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제14조 <삭제 '20. 11. 00.>

제15조(시·도지부 선수위원회 설치 의무) ① 각 시·도지부는 선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'20. 11. 00.>

② 각 시·도지부의 선수위원회 규정은 **협회의 승인을** 받아야 한다. <개정 '20. 11. 00.>

#### 부 칙 (2016. 2. 25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 (2016. 10. 7.)

제2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후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0. 11. 00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